파 주 시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시 보

제2093호
2022년 5월 20일 (금)

차 례

입법예고

○ 파주시공고 제2022-1220호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·· 1

고 시

○ 파주시 고시 제2022-147호 도시관리계획(마장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) 결정(변경) 고시····· 3
○ 파주시 고시 제2022-148호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·····7
○ 파주시 고시 제2022-149호 도로명주소 고시·····10

회 람									

발 행 : 파 주 시

파주시공고 제2022 - 1220호

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」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「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5월 20일

파 주 시 장

1. 자치법규명: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○ 「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전부 개정에 따라 준용 중인 보조금 관리 등 관련 조문 정비 및 '2021년 제1회 조례입법평가위원회'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교육발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 및 신청, 우선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5조)

○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12조)

- 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

4. 개정조례안: 별첨

조례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(http://www.paju.go.kr)의 입법예고란에 게시

5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: 2022년 6월 9일까지(20일간)

나. 제출방법: 서면·우편·FAX 등

다. 기재내용: 성명·주소·생년월일·연락전화번호·의견

라. 제출기관: 파주시청(교육지원과 교육정책팀)

- 주 소: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교육지원과 (우 10932)
- 연락처: 031-940-5251 / FAX 031-940-5929 / cjuice@korea.kr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　　소 :

○ 생 년 월 일 :

○ 전 화 번 호 :

개정안 내용	의　　견	비　고

파주시 고시 제2022 - 147호

도시관리계획(마장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) 결정(변경) 고시

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8-5107호(2008.8.18)에 의해 결정되고, 파주시 고시 제2014-151(2014.10.31)호, 파주시 고시 제2016-96(2016.7.1)호, 파주시 고시 제2017-45(2017.2.27)호, 파주시 고시 제2017-208(2017.12.8.)호, 파주시 고시 제2019-124(2019.5.21.)호로 공원조경계획(변경) 결정된 파주시 광탄면 기산리 산150-1번지 일원의 마장근린공원에 대하여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공원)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을 고시합니다.

2022. 5. 20.

파 주 시 장

1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○ 공원 결정(변경)조서

공 원 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면 적(㎡)			최초 결정일
			기정	변경	변경후	
마장근린공원	근린공원	파주시 광탄면 기산리 산150-1번지 일원	265,450	-	265,450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8-5107호 (2008.8.18)

○ 공원 결정(변경) 사유서

시설명	결정(변경)내용	결정(변경)사유
마장 근린공원	**·공원면적 265,450㎡(변경없음)** **·시설면적 (증7,003㎡)** 기정)51,677㎡, 변경)58,680㎡ **·녹지면적 (감7,003㎡)** 기정)213,773㎡, 변경)206,770㎡ **·건축면적 (감439.49㎡)** 기정)2,395.62㎡, 변경)1,956.13㎡	• 공원 이용객 증가로 인한 주차장 추가 신설 및 편익시설 건축계획 변경

2.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조서

○ 조성계획 총괄표(변경)

세부시설명		부지면적(㎡)	건축면적(㎡)		구성비(%)	비고
			바닥면적(㎡)	연면적(㎡)		
계	기정	265,450	2,395.62	6,040.77	100.0	
	변경	265,450	1,956.13	3,475.26	100.0	
시설부지소계	기정	51,677	2,395.62	6,040.77	19.5	
	변경	58,680	1,956.13	3,475.26	22.2	
도로 및 광장		18,117	-	-	6.8	
휴양시설		3,950	-	-	1.5	
운동시설		1,095	-	-	0.4	
교양시설		4,530	-	-	1.7	
편익시설	기정	13,201	2,175.62	5,600.77	5.0	
	변경	13,201	1,736.13	3,035.26	5.0	편익시설2(변경)
관리시설	기정	10,784	220.00	440.00	4.1	
	변경	17,787	220.00	440.00	6.8	주차장6(신설)
녹지 및 기타	기정	213,773	-	-	80.5	
	변경	206,770	-	-	77.8	

○ 세부 시설결정조서(변경)

시설		세부시설명		면적(㎡)	건축면적(㎡)		공작물(기)	비고
					바닥면적(㎡)	연면적(㎡)		
계	기정	합 계		265,450	2,395.62	6,040.77	41	
	변경	합 계		265,450	1,956.13	3,475.26		
시설부지소계	기정	소계		51,677	2,395.62	6,040.77		
	변경	소계		58,680	1,956.13	3,475.26		
기반시설	기정	소 계		18,117	-	-	-	
	기정	도 로		18,117	-	-	-	
경관시설	기정	소 계		-	-	-	13	
		⑨	그늘시렁	-	-	-	13	
휴양시설	기정	소 계		3,950	-	-	13	
		나	쉼터	260	-	-	-	
	기정	나-1	휴게쉼터	90	-	-	-	
	기정	나-2	캠핑장	3,600	-	-	-	
		⑧	의자	-	-	-	13	
운동시설	기정	소 계		1,095	-	-	4	
		라-1	체력단련장	405	-	-	-	
		라-2	자전거대여장	690	-	-	-	
		②	산악자전거대여소	-	-	-	1	
		⑩	체력단련시설	-	-	-	3	
교양시설	기정	소 계		4,530	-	-	7	
		바	야생초화원	4,530	-	-	-	
		③	조각물	-	-	-	7	
편익시설	기정	소 계		13,201	2,175.62	5,600.77	4	
	변경	소 계		13,201	1,736.13	3,035.26	4	
	기정	사-1	편익시설1	2,565	94.54	94.54	-	
	기정	사-2	편익시설2	7,616	1,338.48	4,192.64	-	2층
	변경			7,616	898.99	1,627.13	-	2층
	기정	사-3	편익시설4	2,400	457.20	968.19		2층
	기정	사-4	전망대	620	150.00	210.00	-	
		⑦	매점	-	20.00	20.00	1	
		⑫	편익시설3	-	55.40	55.40	-	
		⑪	화장실	-	60.00	60.00	2	
		⑬	목교	-	-	-	1	
관리시설	기정	소 계		10,784	220.00	440.00	-	
	변경	소 계		17,787	220.00	440.00		
	기정	아-1	주차장1	1,560	-	-	-	
		아-2	주차장2	2,610	-	-	-	
		아-3	주차장3	1,830	-	-	-	
		아-4	주차장4	3,020	-	-	-	
	기정	자	주차장5	1,140	-	-	-	
	변경	자-1			-	-	-	
	신설	자-2	주차장6	7,003	-	-	-	
	기정	카	관리사무소	624	220.00	440.00	-	
녹지/기타	기정	소 계		213,773	-	-	-	
	변경	소 계		206,770	-	-	-	
	기정	차	녹지	213,773	-	-	-	
	변경			206,770	-	-	-	

3. 도시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) 결정조건 : 게재생략

4. 공원조성계획결정(변경)도면 : 게재생략

5.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공원녹지과(☎031-940-4631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파주시 고시 제2022 - 148호

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

파주시 고시 제2018-157호(2018.07.24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고, 파주시 고시 제2020-133호(2020.05.22.)로 사업시행계획 변경고시 된 파주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 제1항,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합니다.

2022년 5월 20일

파 주 시 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(변경없음)
   가. 정비사업의 종류 : 주택재개발사업
   나. 정비사업의 명칭 : 파주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(변경없음)
   가. 위 치 :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41번지 일원
   나. 면 적 : 54,033.30㎡ 측량상 (53,970.0㎡, 공부상)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(변경없음)
   가. 시행자 : 파주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(조합장 유해균)
   나. 주 소 :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9, 2층(금촌동 삼영빌딩)

4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(변경없음)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60개월

5. 사업시행계획 인가일(변경없음) : 2018년 7월 24일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(변경없음) : 생략

7. 건축물의 대지면적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(변경)

주 용 도	대 지 면 적 (㎡)	건 축 면 적 (㎡)	연면적(㎡)	건폐율(%)	용적률(%)	높이/층수
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	38,990.0	7,924.44 (+181.00)	155,426.54 (+56.48)	20.32 (+0.47)	283.65 (+0.33)	86.10m / 지하2층 ~ 지상30층

※ 변경사유 : LH 품질검토 의견 반영에 따른 단위세대 등 건축계획 변경

8.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

구 분		공급면적			세 대 수	비 율 (%)
		전 용 면 적 (㎡)	공 용 면 적 (㎡)	면 적 합 계 (㎡)		
총 계		80,148.29 (-35.44)	26,962.97 (+111.02)	107,111.24 (+75.57)	1,213	100
조합 (임대)	소계	2,414.51 (-18.65)	1,348.23 (+56.57)	3,762.74 (+37.92)	61	5.03
	39형	39.58 (-0.31)	22.10 (+0.93)	61.68 (+0.62)	61	5.03
조합 (분양)	소계	14,388.83 (+8.11)	4,505.32 (-67.54)	18,894.14 (-59.43)	203	16.74
	39형	39.58 (-0.31)	22.10 (+0.93)	61.68 (+0.62)	7	0.58
	59A형	59.91 (+0.04)	22.22 (+0.38)	82.13 (+0.42)	65	5.36
	59B형	59.83 (-0.07)	23.25 (+0.75)	83.08 (+0.68)	25	2.06
	74형	74.80 (-0.03)	21.77 (+0.54)	96.57 (+0.50)	28	2.31
	84형	84.97 (+0.13)	21.99 (-1.70)	106.96 (-1.56)	78	6.43
공공지원 민간임대	소계	63,344.95 (-24.90)	21,109.42 (+121.99)	84,454.36 (+97.08)	949	78.24
	39형	39.58 (-0.31)	22.10 (+0.93)	61.68 (+0.62)	117	9.65
	59A형	59.91 (+0.04)	22.22 (+0.38)	82.13 (+0.42)	179	14.76
	59B형	59.83 (-0.07)	23.25 (+0.75)	83.08 (+0.68)	193	15.91
	74형	74.80 (-0.03)	21.77 (+0.54)	96.57 (+0.50)	260	21.43
	84형	84.97 (+0.13)	21.99 (-1.70)	106.96 (-1.56)	200	16.49

※ 변경사유 : LH 품질검토 의견 반영에 따른 단위세대 등 건축계획 변경
※ 파주시 고시 제2020-133호 상 고시된 면적오기 수정반영

9. 법 제97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(변경없음)

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			
종 류	규 모(㎡)	시행자	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
도 로	4,958.9	파주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	시행자 설치 후 무상귀속
어린이공원	1,775.3		
문화공원	2,185.5		
녹 지	2,213.1		
주차장	1,322.3		

10.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57조에 따른 인·허가 등의 의제처리사항 (변경없음)

가.「주택법」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

나.「건축법」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

다.「산지관리법」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

다.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

11. 관계도서는 파주시청 도시재생과(☏031-940-4776) 및 파주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(☏031-946-3927)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 끝.

파주시 고시 제2022-149호

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, 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, 제26조제7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(분할·폐지포함)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. 5. 20.

파주시장

○ **도로명주소 :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둑방길 135-106 등 110건**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(별지참조)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토지정보과(☎940-4891~3)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**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**

▶ 도로명주소는 2022. 5. 20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
▶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**도로명주소 변경 등**

▶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1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▶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**참고사항**

▶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